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정법〉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0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이차전지산업 현황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7
다. 주요 검토사항	11
2. 조문별 검토	13
가. 총칙 (안 제1장)	13
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안 제2장)	15
다.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안 제3장)	22
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등 (안 제4장)	29
마. 전문인력 양성 (안 제5장)	37
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특례 (안 제6장)	41
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 (안 제7장)	5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입주기업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지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도,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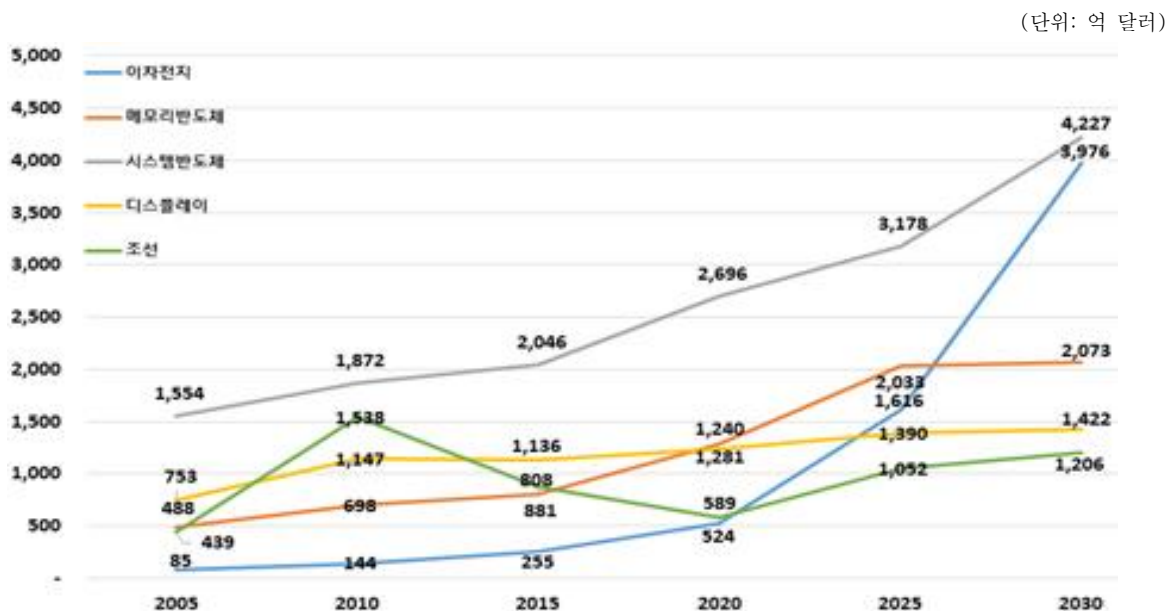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이차전지산업 현황

“이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스마트기기 등의 산업분야에 널리 쓰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저장과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

[그림 1] 이차전지 및 산업별 글로벌 시장 규모



출처: SNE·B3(배터리), OMDIA(디스플레이, 반도체), 클락슨(조선)에서 분야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 전망보고서, 이차전지」 p.14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약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며, 2024년 기준 국내기업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세계 18.6%(북미 48.4%, 유럽 45.3%)로 중국 제외 글로벌 1위를 점유하고 있음.

[표 1]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별 점유율 현황

구 분		글로벌	중국	중국 외	북미	유럽
점 유 율	한 국	18.6%	1.4%	43.6%	48.4%	45.3%
	중 국	74.6%	98.3%	42.2%	18.5%	52.8%
	일 본	5.8%	0.2%	11.8%	27.2%	1.7%
시장규모(GWh) (시장비중)		899 (100%)	533 (59%)	366 (41%)	133 (15%)	174 (1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출처: SNE)

이차전지는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산업관련 중요성 외에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정치·외교 관련 및 드론·로봇 등 안보·전략무기 관련 주요자산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한편, 이차전지 시장은 전방산업인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부각되면서 급성장하였으나, 2022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 약화에 직면하고 여기에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 조절로 인하여 수요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EU 시장 점유율이 48%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원재료 및 공급망 측면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 및 소재의 조달 및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배터리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경쟁자인 중국의 시장 진출 제한, 전기차 세액공제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등 우리 배터리 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상호관세 및 IRA 정책 변화,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 등으로 인하여 대미 수출 및 투자에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EU는 핵심원자재법(EU Critical Raw Material Act)을 통해 배터리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제정을 통해 ESG 강화 이슈를 부각함으로써 역내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시도 중인 상황임.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8장, 54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제정안의 구성

장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제8조(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제9조(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10조(통계의 작성)
	제11조(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2조(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제3장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제13조(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제14조(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8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9조(시범사업)
제4장 이차전지혁신클러 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20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제21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2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제23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제24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25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
	제26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5장 이차전지산업의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장	조문
전문인력 양성	제28조(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제3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6장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특례	제31조(조세에 관한 특례)
	제3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3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제3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특례)
	제37조(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생산보조금의 지급)
	제39조(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제40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제41조(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4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43조(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44조(이차전지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제4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6조(고용에 대한 지원)
	제47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48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원)
제7장 이차전지산업특별 회계	제49조(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50조(세입·세출)
	제5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8장 보칙 등	제52조(보고 및 검사 등)
	제53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54조(과태료)
부칙	시행일

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정책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대통령 소속의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전담기구로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의 설립·지정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함.

둘째,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기술개발 사업 추진, 공급망 안정화 지원,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국제협력 지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등에 관한 육성 및 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함.

셋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산업기반시설 조성, 입주 기업체 지원, 연대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클러스터 육성시책 마련 등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넷째, 전문인력의 양성,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등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섯째, 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공기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 생산보조금의 지급, 전기요금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전환지원 특례, 규제개선, 고용에 대한 지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 이차전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특례를 규정함.

여섯째,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원 등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다. 주요 검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저조,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라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이차 전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임.

이러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 내용 중 관련 입법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으로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관련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계획 반영(안 제13조), 입주기업을 위한 부지조성 및 의료·교육·체육시설, 주택 등 주거환경개선 시설 지원(안 제21조), 생산시설 및 설비 구축·취득 비용 및 토지 취득 비용의 지원(안 제23조), 학생 정원의 우선 증원(안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안 제35조) 등과 함께

생산보조금의 지급(안 제38조),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안 제39조),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안 제40조) 등이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제정안 중 현행법 상 규정없는 주요내용

조항	내용
안 제13조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관련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계획 반영
안 제21조	입주기업을 위한 부지조성 및 의료·교육·체육시설, 주택 등 주거환경개선 시설 지원
안 제23조	생산시설 및 설비 구축·취득 비용 및 토지 취득 비용의 지원
안 제29조	학생정원의 우선증원
안 제35조	인·허가 의제
안 제38조	생산보조금 지급
안 제39조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
안 제40조	근로기준법 적용특례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안 제1장)

제 정 안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개발·실증·설계·제작·생산·가공·공급·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 나.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 다.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 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마. 이차전지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란 이차전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 이차전지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제1장에서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규정함.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의 범위를 완제품, 소재, 핵심 광물과 부품·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차전지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포괄하게 하고 있음.

[표 4] 동 법률안 상 이차전지산업 분야

산업분야	검토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	타법 관계 없음
양극재·음극재· 전해질·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	
이차전지 관련 부품·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이차전지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유지보수·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사용후배터리법안 함께 검토 필요

이차전지 완제품은 물론 그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및 재사용등 후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차전지 등 배터리의 사용 후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2월 12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5년 5월 16일 박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이 법들과의 관계에서 소관 분야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안 제2장)

제 정 안
제2장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 및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
7.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에 관한 사항
8. 이차전지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9. 이차전지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1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①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35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7. 제36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특례에 관한 사항
8.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차전지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공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거나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된 이차전지산업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이차전지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소재 국산화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제품 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7.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9.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 제2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실행계획의 수립,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이차전지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통계의 작성, 이차전지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5] 제정안과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비교

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안 제5조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육성·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법 제6조 육성·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 대통령 소속	법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안 제8조 이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법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위원장
안 제9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법 제7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안 제10조 통계의 작성	법 제8조 통계의 작성
안 제11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안 제12조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	-

기본계획·실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단, 현황조사 등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실행 체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안에 의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여 소속 및 위원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률안 제8조에서는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실무운영을 위한 조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차전지산업혁신단을 두도록 하는 한편, 부처간 소관 사항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타 부처 소관 사항과 중복·저촉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해 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법률안 중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타 부처 소관 사항과 중복되는 사무가 상당부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비롯하여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통계 작성 등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고, 동 사항은 전략산업 지원 계획의 전체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체계적이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크지 않으며,

“이차전지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 등이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협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특허청은 안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와 관련하여 주요 특허 동향 파악 및 전략적 기술·특허의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한 각 호에 “이차전지산업의 지식재산·기술 확보 및 보호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계 법령의 개선권고, 용수·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 설치·확충, 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제공 및 규제개선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안 제7조제8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안 제3장)

제 정 안

제3장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제13조(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용수·폐수·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4.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14조(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실증 기반 구축사업
3.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4.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이차전지 원료 및 소재의 국산화 등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5.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특허출원 등 해외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자문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과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차전지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원(안 제13조)

안 제13조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전력·용수·폐수·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계획·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도로건설·관리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차전지산업은 전력·용수의 소비 및 환경부하가 많은 산업으로, 클린룸 운영, 전극 제조, 코팅, 조립, 충방전 검사 등의 공정에서 전력 소비가 많고, 세정, 코팅, 냉각 등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발생으로 폐수처리 관련 기반시설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도록 하여, 각 계획 수립 시 이차전지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전력·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국민경제와 국가경제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공공이익과 경제성을 종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 상 전력수급기본계획등 수립 시 특정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음.

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반도체특별법안에서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도 철강사업 관련하여 국가 전력망 및 용수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전력망·용수망·도로망 설치 및 확충 등을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반도체·이차전지·철강 등 각 개별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게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6] 우리 위원회 회부 법률안 중 기반시설 관련 내용

분야	제정안	기반시설 지원
철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반도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반도체 특별법안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이차전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각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반영 내용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안 제13조제3항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별 시설에 대해 수립하는

시설설치 계획으로서, 계획의 위상 및 주체 측면에서 제정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② 기술개발사업 추진, 공급망 안정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안 제14조~제19조)

제정안 제14~19조는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 지원, 국제협력 등의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들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특별법”) 제4장부터 제10장까지 등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입법의 취지와 현행 법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정안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추천에 대해 규정하는 제정안 제16조제3호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와 관련된 제도를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제2항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한 제정안 제18조와 관련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는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항의 규정은 불필요하고,

안 제2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그 외의 자로서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가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한 주체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충돌이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임.

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등 (안 제4장)

제 정 안
제4장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20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6.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지역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주택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설비투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8.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혁신발전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우

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입주기업체의 투자·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2. 이차전지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차전지산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3. 이차전지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차전지산업의 영위를 위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토지 등 취득비용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대협력모델의 구축·발굴 및 지원과 실태조사·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

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체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체계적 육성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장은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약칭 시 “클러스터”)의 지정(안 제20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안 제22조), 입주기업체 등 지원(안 제23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안 제24조), 클러스터 육성시책(안 제25조), 지정 해제(안 제26조) 등에 대해 규정함.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에 기술·산업·인프라·인력 등을 집중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을 국가·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며, 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설비투자·연구시설 투자비 등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같이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첨단전략특화단지에 대한 조성·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지원, 클러스터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제정안에서는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부지조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지원의 적정성 및 필요성 차원에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신설 및 관련 지원사항 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장의 내용 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또는 연구기관(이하 “입주기업체등”)에 대한

부지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주택 등 각종 주거환경 개선시설의 설치에 대한 우선 지원(안 제21조제1항제2호), 국내복귀기업의 클러스터 내 설비투자(안 제21조제1항제3호),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안 제22조), 입주기업체등에 대한 생산시설, 설비 등의 설치·구축·취득 비용 및 토지 등 취득비용의 지원(안 제23조)임.

특히, 안 제2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낮추어 투자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에서는 국가·지자체가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통해 의무지출과 유사하게 예산 지원¹⁾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제정안에서는 이차전지산업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과 함께,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에 대해서는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행법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의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경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의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혼선의 우려가 있고, 특화단지 육성 시책 수립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 규정도 대부분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클러스터 제도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으며,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는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이 10조원 이상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50%·수도권 40%, 10조원 이하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40%·수도권 30%로 규정되어 있음.

[표7]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

	특화단지 투자규모별 구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상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50%	40%
(하 구간)	100조원 미만	30조원 미만	10조원 미만	5조원 미만	40%	30%

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

입주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중 생산시설·설비 투자 비용 및 토지 취득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는 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반영이 가능하고,

안 제22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등의 사항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할 실익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입장임.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수도법」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수도사업자가 산업단지 및 대규모 공장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 전문인력 양성 (안 제5장)

제 정 안

제5장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
2.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3. 재직자의 직업교육, 능력개발 및 향상
4.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
5.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6.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7. 해외 및 수도권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이차전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5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27조),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28조), 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안 제29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안 제30조) 등에 대해 규정함.

이차전지산업은 화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기계, 제어, AI 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향후 이차전지 산업의 급성장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숙련 연구개발 인력 및 엔지니어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023.12.,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기술 인재 확보 전략」(2023. 12., 관계부처 합동) 등을 통해 2032년까지 연구개발, 생산기술, 설계·디자인 등의 직무에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약 5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배터리아카데미 구축을 통해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대상 실무 중심 교육훈련 과정 운영과 이차전지 소재·셀 및 재사용·재활용 분야 대학원 지정 등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향상 및 지원, 연구개발, 교육, 고용유지 및 안정, 인력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확충,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대학원 등을 이차전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계약학과 및 학부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특례 (안 제6장)

제 정 안

제6장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특례

제31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
2. 제22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3. 제23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 등 지원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사업
2. 제21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3. 제22조에 따른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운영
3.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핵심적인 필요인력에 대한 국가 핵심인재 지정 및 지원
4. 국내 원료·소재·부품·장비 및 이차전지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내 원료·소재·부품·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과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결정·인가·면허·협약·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
3.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이차전지산업 분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37조(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생산보조금의 지급)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생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요 원자재의 수입대체 또는 국산화에 따른 가격차이 보전 비용
2.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고비용 요소에 대한 운영 비용
3. 공급망 취약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에 따른 초기 부담 비용
4. 친환경 인증 및 공정 개선을 위한 부대 비용

② 생산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내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생산시설을 갖출 것
2. 산업용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총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정을 보유할 것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할 것

제40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①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것

2. 근로소득 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공·제조를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이차전지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 또는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생산·가공·제조를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3조(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이차전지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 관리주체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차전지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차전지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원) 정부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가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장은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특례로 조세에 관한 특례(안 제31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32·33조),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대한 특례(안 제3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35조), 이차전지산업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특례(안 제36조),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37조) 등과,

생산보조금의 지급(안 제38조),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안 제39조),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안 제40조), 이차전지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안 제4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42조), 중소·중견기업의 이차전지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안 제43조), 이차전지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안 제44조), 규제개선 신청 등(안 제45조), 고용에 대한 지원(안 제4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제47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원(안 제4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7조의 2), 규제개선(법 제29·30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부장특별법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법 제24조), 실증기반의 개방·활용(법 제30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 간소화(제11조의1 제11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정안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음.

반면, 생산보조금의 지급(안 제38조),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안 제39조),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안 제40조) 등은 다른 현행법에서 유사한 내용을 적용하기 어렵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35조) 등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주요 조항별로 검토하도록 함.

① 생산보조금의 지급 (안 제38조)

안 제38조에 따른 생산보조금은 이차전지 관련 원자재의 수입대체 또는 국산화에 따른 가격차이 보전,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고비용 요소에 대한 지원, 공급망 취약 품목의 내재화 또는 국내 생산 전환에 대한 초기 부담, 친환경 인증 및 공정 개선을 위한 부대비용 등 각호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쟁국이 낮은 인건비 및 원재료비, 정부의 생산보조금 지원²⁾, 느슨한 환경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쟁환경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하 저감 및 국가안보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환경규제 및 공급망 확보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배터리 소재 등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시설·장비·인재·임대료 지원은 물론 생산보조금, 환경비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②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례 (안 제39조)

안 제39조에 따른 한시적 전기요금 지원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요건³⁾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과 주요국의 대응」 (2024.10.)에 의하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2024.6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산업에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09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고, 그 내용은 정부 승인 구매자 리베이트, 10% 판매세 면제, 인프라(주로 충전기)에 대한 정부 지원, 전기차 제조사를 위한 R&D 프로그램 등임. 또한, 저리대출, 비상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저비용의 토지와 전력 등을 포함하는 경우 중국 GDP의 4.9%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3) 1. 국내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소재·부품·장비 생산시설을 갖출 것
2. 산업용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총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공정을 보유할 것
3.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할 것

이차전지 산업은 전극 제조, 코팅, 조립, 충방전 등 정밀 공정이 많고, 지속적인 온도·습도 유지를 위해 대규모의 클린룸과 설비가 가동되므로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제조공정 중 전력 비용은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 및 공정,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개 완성 배터리 제조 공정의 경우 약 5~10%, 소재 제조 공정의 경우 약 25~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중국 등 경쟁국은 생산보조금 지원, 저렴한 전력·용수 공급 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생산단가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 관련 국산 제품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제조과정의 간접비 부담을 낮출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찬성하면서

「노인복지법」 제37조의3⁴⁾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3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 등 법률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으나 실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한전의 공급약관 등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전기요금 감면 시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면·보조 여부 및 금액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안 제40조)

안 제40조는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소득 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4) 「노인복지법」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근로소득 수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하여 집중 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수요 대응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던 중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이 발표·시행된 바가 있음.

특정산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④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35조)

안 제35조는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그 밖에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2절은 “인허가의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한 여러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해당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35조는 인허가의제를 규정함에 있어 그 요건을 “위원회의 승인”으로 규정하여 “주된 인허가”와 차이가 있으며,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및 기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인허가의제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주된 인허가” 행위로서

클러스터의 지정 또는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지원을 확정된 경우 등을 규정하여 「행정기본법」과 조화롭게 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안에 따른 인허가의제 규정은 인허가 처분의 주체가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로 사실상 변경되는 효과로 해석되어 관련 인허가 처분에 대한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갖는 위원회가 실질적 심사까지 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활용하거나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 원칙에 부합하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 (안 제7장)

제 정 안

제7장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

제49조(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이차전지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재산의 매각 또는 운용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전지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2.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를 위한 사업
3.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4.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지원사업
5.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사업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
7. 이차전지산업 생산보조금 지급사업
8.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안 제7장은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에 관한 장으로, 이차전지산업특별회계의 설치(안 제49조), 세입·세출(안 제50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안 제51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운영,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생산보조금 지급, 공급망 안정화·내재화 등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세입측면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 특정한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회계를 통한 지원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